

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

의안 번호	1439
----------	------

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
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12. 1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2023년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
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1439호,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에 따라,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사업비 및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주거환경개선, 주민복지증진 사업비를 증액하고, 정책사업비인 예치금을 당초 대비 20% 초과 감액하여,
- 나. 비용자성 사업비(효율적인 폐기물처리)를 31,001백만원, 예치금을 7,822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.

다.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: 백만원)

< 지 출 부 문 >						
구 분		당 초 (A)	1차 변경	2차 변경 (B)	증 감 (C=B-A)	증감률 (C/A*100)
계		39,824	41,377	38,823	△1,001	△2.5%
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	비용자성 사업비	27,143	31,001	31,001	3,858	14.2%
	예치금	12,681	10,376	7,822	△4,859	△38.3%

※ 최종 의회 의결액(당초, 제315회 정례회)대비 정책사업비(재무활동-예치금) 20% 초과(38.3%) 변경

<1차 변경>

-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증액(당초 6,463백만원→8,561백만원)
-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지원 증액(당초 768백만원→798백만원)
-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증액
(당초 10,036백만원→10,536백만원)
-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주민복지증진사업 증액
(당초 9,876백만원→11,107백만원)
- 예치금 감액(당초 12,681백만원→10,376백만원)

<2차 변경>

- 정책사업비인 예치금 감액(당초 12,681백만원→7,822백만원)

Ⅲ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중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을 당초계획 대비 △48억 5,900만원¹⁾ 감액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²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 - 행정안전부의 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³⁾에는 지출계획중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%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,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△38.3%, △48억 5,900만원을 감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1)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 변경

- 1차 변경('23 8. 8) :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(38억 5,800만원), 일반예산(재무활동)(△23억 500만원)

※ 「지방기금법」 제11조 단서규정(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)에 따라 의회의결 없이 자체변경

- 2차 변경(금번 변경안) : 일반예산(재무활동)(△25억 5,400만원)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3) 행정안전부, 「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'22. 7), p.296

〈표 3-1〉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	당 초 (A)	1 차	2 차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지 출 합 계		39,824	41,377	38,823	△1,001	△2.5
효 율 적 인 폐 기 물 처 리		27,143	31,001	31,001	3,858	14.2
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		12,681	10,376	7,822	△4,859	△38.3
보 전 지 출		12,681	10,376	7,822	△4,859	△38.3
여 유 자 금 예 치		12,681	10,376	7,822	△4,859	△38.3

※ 자료근거 :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
②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'23.10.16) 재구성

○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실상 '2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'23회계연도 종료전 반영하려는 것으로, '22회계연도 수입계획 보다 실제 수납이 적어 부족 재원이 발생한 것으로⁴⁾ 예치금 결산결과 부족 재원이 발생한 것은 당초 계획보다 실제 지출 즉, 여유재원 적립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⁵⁾

- 그럼에도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'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지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안임에도 결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수입계획 또한 누락하여 제출 하는 등 기금의 지출계획만 단순히 변경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의안심사에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4) 예산결산특별위원회, 「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」('23. 7), p.12
-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 기금 수입결산 현황 -

(단위 : 백만원, %)

수 입 계 획 액		전 년 도 이 월 액	수 입 계 획 현 액	징 결 정 수 액	실 수 납 제 액	수 납 륜
당 초	수 정 (A)					
37,872	37,486	-	37,486	34,341	34,339	91.6

5) 예산결산특별위원회, 「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」('23. 7), p.20
-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 기금 예치금 결산 현황 -

(단위 : 백만원)

(단위 : 억원)

기금운용계획	지출계획현액	지출액	
당초수정	(A)	(B)	(A - B)
9,186	9,363	9,363	6,809
			2,554

〈표 3-2〉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수입계획)

(단위 : 백만원, %)

수입부문	당초 (A)	1차	2차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수입합계	39,824	41,377	38,823	△1,001	△2.5
공공예금이자수입	176	229 ¹⁾	229	53	30.1
예치금회수	9,363	9,363	6,809	△2,554	27.3
기타회계전입금	30,186	31,686 ²⁾	31,686	1,500	5.0
예탁금이자수입	99	99	99	-	-

※ 자료근거 : ①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

②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수입계획)

③ 서울특별시, 자원회수시설과-4627('23.11. 1) 재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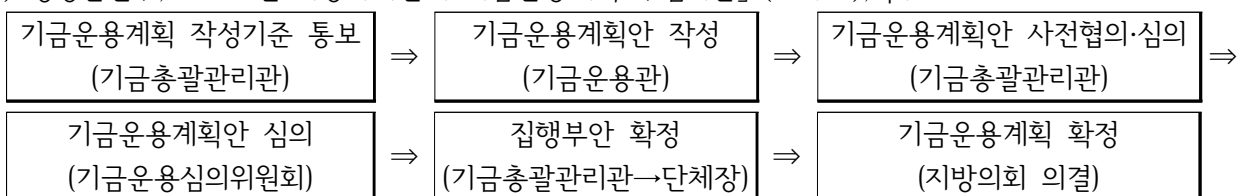
주1)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(5,300만원), 주2) 기타회계전입금 증액(15억원)

○ 아울러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훈령인 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⁶⁾,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⁷⁾ 다음에서야 사후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사후에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어⁸⁾ 행정안전부의 훈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

○ 더욱이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금번 정례회에 같이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,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'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,

- 이는 의회의 기금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만 인식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

6) 행정안전부, 「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'22. 7), p.293



7) 의안번호 : 1439, 「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제출일 : '23.10.16)

8) 서울특별시, 자원회수시설과-4309('23. 10. 23) “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”
기금운용협의회 일시 : 양천('23.10.17), 마포('23.10.17), 노원('23.10.18), 강남('23.10.18)